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19th Centu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Japanese Treaty of 1876

저자 (Authors)	안종철 Jong-Chol An
출처 (Source)	역사비평 , 2016.2, 113-136(26 pages) Critical Review of History , 2016.2, 113-136(26 pages)
발행처 (Publisher)	역사비평사 The Institute For Korean Historical Studies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14793
APA Style	안종철 (2016).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역사비평, 113-136
이용정보 (Accessed)	서울시립대학교 203.249.***.25 2020/08/27 21: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19세기 '국제법'의 성격과 조일수호조규(1876)

안중철

1. 들어가며

국제법(international law)은 국가 간 규약(international agreements)에 더해 관습적인 국제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도 포함한다.⁰⁰¹ 19세기의 국제법은 국가의 주권, 평화와 전시의 규칙, 그리고 국제사절과 자국민 보호를 둘러싼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의 국제법은 17세기 유럽의 공법세계로부터 유래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19세기 말에 형성되었다. 한국의 경우 조일수호조규(이하 강화도조약, 1876)⁰⁰² 체결 시점이 조선왕조가 근대 국제사회에 진입한 계기로 평가되면서, 통상 근대사의 출발점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이 조약은 조선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계기로 평가되면서, 조약의 불평등성과 더불어 일본의 한반도 침략 개시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⁰⁰³ 그리고 해외 학계에서도 비슷한 시각에서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 일본을 매개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평가된다.⁰⁰⁴

이 조약에 대해 일본 침략의 시발점으로서 그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은 일견 타당한 점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비교적 긴 시간(1876~1910) 동안 조선에 대해 동일한 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움직였을 것으로 가정한다는 점은 무리가 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조선왕조를 ‘타자화’함으로써 역사적 활동의 주요 참여자(agency)로서의 입장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한 반대로서 최근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조선왕조의 내적 논리에 주목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새로운 근대조약체제로 넘어가는 조약의 과도기적 성격을 주목하고 있다.⁰⁰⁵

해외 학계의 ‘국제법’ 이해는 특히 국제법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럽적 공법질서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역내 지역사회를 ‘중국적 세계질서’ 혹은 ‘조공(朝貢)질서’로 상징함으로써 유럽의 국제질서와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체제를 이분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해를 따를 경우, 유럽의 ‘국제법’이 동아시아, 특히 당시의 조선에 들어올 때 하나의 공통적이고 고정된 ‘규범’ 아래서 실정법처럼 확고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는 유럽 중심의 공법질서가 결국 동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다소 목적론적이고 ‘전파론적(propagational)’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사신 파견, 자국민 보호에 대한 규범 등이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전쟁이나 다른 비유럽 지역을 대하는 규범은 확고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유럽 제국들이 비유럽 지역과 조약을 맺을 당시에는 국제법의 규범이 확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법은 “형성 중인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규범은 1899년, 1908년의 헤이그 협약,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통해 일정하게 성문화되었다. 그 전까지는 국제 분쟁에서 무력의 사용 여부

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9세기 국제법은 형성 중이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⁰⁰⁶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는 조선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받아들여지는 강화도조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유럽 내 공법질서는 비유럽권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다는 관점⁰⁰⁷을 한국 맥락에 적용해—이 경우 일본과 관련 지어—보고자 한다. 유럽의 공법질서가 유럽 내에서 형성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는 주장이 구미권 국제법 학자들에게 아직도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⁰⁰⁸ 그런 점에서 식민지·반식민지 지역과 국제법의 관계는 여전히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둘째는 강화도조약을 과연 유럽적 공법질서 이전의 조약, 즉 전통적 동아시아 조약체제의 연속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는 최근 역사학자와 국제법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고 있다.⁰⁰⁹ 그 논점에 더해서, 이 글에서는 조선에서 유럽적 공법은 ‘만국공법’이라는 이름으로 강화도조약 당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약 내용이 어떤 점에서 전통 질서와 더 연결되는지 보고자 한다. 전파론적 시각에서는 이 조약에 대한 조선 정부의 국제법적 무지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지만, 정보 유무와 별개로 개별 사회의 필요성에 의한 지식의 전유(專有)가 문제가 될 것이다. 즉 국제공법이 소개되는 것과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터인데, 이 글은 강화도조약도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법체제로의 편입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셋째는 19세기 후반 국제법이 ‘문명’ 담론을 포함하기 전 단계에서의 강화도조약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 내 경직된 “유럽법”으로서의 19세기 후반 국제법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 점에서 조선 정부가 새로운 국제질서

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통 동아시아체제의 만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자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강화도조약을 전통 한국이 도달할 수 있는 전통 교린체제와 근대 유럽법 질서의 혼합으로 볼지, 아니면 자체적인 유럽공법 체제의 적용이었는지 생각해볼 지점이 생긴다. 근대 공법질서의 적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더 주목할 사건으로 조선왕조의 경우 조미수호조약(1982)이 있는데, 비록 임오군란(1882. 7)과 연이은 청의 간섭, 조선 정부의 내정 혼돈으로 조선 내 공법체제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도 강화도조약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 글은 국제법과 강화도조약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를 통해서 한국의 국제법 수용 문제를 한국의 역사와 국제법의 역사가 만나는 장으로 새롭게 구성할 단초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19세기 국제법의 변화

19세기 제국주의 구미 국가들과 일본 등은 해외 침략을 위해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880년대 후반 이후 ‘국제법’은 유럽 ‘문명국가(civilized countries)’들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문명’을 기준으로 구성원의 자격 여부가 판단되면서 명확해진 사실이었다. 1880년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탈아론’에서 조선을 대상으로 개화(문명), 반개화, 야만이라는 기준을 확립했다. 이는 유럽 공법이 자연법(Natural Law)의 입장에서 법실증주의(positivism)로 변화하면서 비유럽 국가들을 지배한 것과의 궤를 같이했다.¹⁰

하지만 ‘문명’이라는 기준은 19세기 후반에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며, 그 이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방식이 다양하게 존재했다. 강화도 조약과 이전의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 1871)는 유럽 공법체제가 법실증주의로 선회하기 전 다양한 형태의 국제관계의 사례들로 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 국제법이 강조한 ‘주권(sovcreignty)’ 개념은 각국이 유럽 공법체제를 전유하면서 공고화된 개념이다.⁰¹¹ 이는 아래에서 살펴겠지만 강화도조약 당시 가장 첨예한 문제가 제1조 ‘자주(自主)’로 설정된 것, 즉 주권 개념이 가장 중요해진 상황에서 드러난다.

19세기 유럽 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와 20세기 초 여러 학자들(James Lorimer, W.E. Hill, John Westlake, Thoams Lawrence, Henry Wheaton, Lassa Oppenheim, M. F. Lindley, Theodore D. Woolsey, Friedrich F. Marten, Johann K. Bluntschli)의 저서와 동아시아에 번역된 국제법 저서들 및 그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⁰¹² 그러나 적어도 자연법적(natural law) 사상과 실증주의적(positivistic) 관점으로 크게 나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자연법적 사상은 자연법의 원칙, 즉 정의의 관념과 법을 “통괄하는 도덕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주권체가 법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법 자체가 주권적 의지의 창조물”이라고 한 점에서 사실상 민족국가 주권 중심의 입장이다.⁰¹³ 이는 주권체 자체의 윤리성을 묻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상대주의나 현실주의와 결합될 소지가 있었다. 유럽 내에도 극단적인 실증주의적 해석에 따라서 국제법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일본 사절단을 만났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은 강대국이 사용할 때 힘을 더해주는 것이지만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의 주권은 얼마든지 희생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⁰¹⁴

유럽 공법체제는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 1583~1645)나 에머 드 바텔(Emer de Vattel, 1714~1767)을 대표로 하는 자연법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법적 전통하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문명’과 ‘비문명’의 구별이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⁰¹⁵ 하지만 유럽사회 내의 국제법은 서서히 같은 ‘기독교 문명’ 내에서의 상주사절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보호, 그리고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일련의 조약들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그 기원은 베스트팔렌조약(1648)에 있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부터는 실증주의적 법철학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자연법과 실증법을 조화시키려는 학자들의 노력이 따랐다.⁰¹⁶

그러나 최소한 19세기 초반까지는 ‘문명’과 ‘비문명’이 국제법(Law of Nations)상에서 크게 구별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19세기 초 판결에서도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대법관장 존 마샬(John Marshall)은 노예 문제와 관련된 1825년의 판결에서(The Antelope, 23 U.S. 5, 1825)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전쟁포로를 노예로 삼는 것은 여전히 국제법(law of nations)의 규범이고 미국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혁명(1789) 이후 19세기 들어 나폴레옹의 유럽 내 석권과 그에 반동한 비인체제(1815) 등을 통해 유럽 각국에 민족주의가 확고히 정착되었고, 이를 공고화시킨 것이 바로 1871년 독일 통일이었다. 또한 민족주의를 받치고 있는 주권 개념을 통해 법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까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국가 간 조약은 바로 “주권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국가들이 모인 공동체, 사회, 그리고 가족 등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⁰¹⁷ 그리하여 19세기 중반 주권을 강조하고 각국의 평화적인 교제를 강조하는 국제법의 원칙이 유럽을 중심으로 정착되었다.

19세기 초에는 ‘주권체(sov^{er}ign)’라는 말이 ‘주권(sov^{er}eignty)’이라는 추상적

인 용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다 19세기 말에는 ‘주권’이라는 “추상적이고 작위적인 권위로서의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았는데, 적어도 그 전까지는 많은 종류의 주권체와 주권이 문제없이 공존했다. 예를 들어, 동인도회사는 지역의 왕자들과 영국 왕실과 더불어 ‘주권’을 행사했다. 이것은 민족국가 단위가 아닌 다양한 주권체의 여러 형태가 민족국가 단위의 주권으로 수렴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준다.⁰¹⁸ 원래 주권체는 한 영토 내에서 개인이든 정부든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민족국가로 굳어지게 되었다.⁰¹⁹ 이것은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질서에서 ‘주권체’라는 것이 도시국가이든 작은 군주국가이든, 혹은 조공국가이든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여졌던 휘튼의 국제법도 이러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33. 주권국가는 내부 정체(contitution)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외부세력과 관계없이 자신을 독립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민족(nation)이나 사람들(people)로 일반적으로 규정된다. (...) 어떤 국가들은 절대적 통치자나 우주의 섭정자를 제외하고 그 어떤 상위자도 인정하지 않는 완전한 주권자이고 독립자이다. 다른 국가들의 주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제한되어 있고(limited) 제약되어(qualified) 있다.

§ 36. 자유도시인 크라코우(Cracow, 폴란드의 도시로 1815~1846년간 존재-인용자)와 이오니아 섬의 합중국(United States of the Ionian Islands, 그리스 지역의 섬들로 구성된 정체로 현재는 그리스 영토-인용자) 외에 몇 개의 다른 반주권체(semi-sovereign) 또는 의존적인 국가들(dependent States)은 현존하는 유럽의 공법에서 인정하고 있다.⁰²⁰

그러나 19세기 말이 되면 ‘주권’은 한 영토 내에서 법을 만들 힘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민족국가와 연결된다.⁰²¹ 데이비드 케네디(David Kennedy)의 아래의 언급은 19세기에 일어난 중요한 국제법상 변화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발전들은 유럽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개념들을 발생시켰다. 19세기에 국제법이 모든 곳에서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인식되어왔다. 유럽의 주권체들 간의 관계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는 다른 규칙들이 적용되었다. 북아프리카 정치체와 오토만제국, 그리고 여러 원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유럽은 다른 규칙의 지배를 받았다. 19세기 초에 이러한 다양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었다.⁰²²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도 ‘문명’이나 ‘주권’이라는 척도가 유럽 중심의 공법질서에서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 바로 오늘날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오토만제국과 유럽 제국이 맺은 1856년 파리조약이다. 이 조약을 통해 오토만제국은 유럽 내 질서로 편입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평가가 주목된다.

[파리조약을 통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오토만제국은 유럽 공법의 참여자로 받아들여졌다. 잠정적으로 유럽의 국가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위치를 보장받게 되었다.⁰²³

물론 그것은 오토만제국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면서 오토만을 ‘유럽 국제사회(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럽 국제체제(European international system)’의 한 부분으로 인정한 것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⁰²⁴ 적어도 ‘문명’이 한 국가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⁰²⁵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1842년 영국과 청제국이 맺은 남경조약과 1860년의 북경조약, 그리고 일본과 맺었던 1858년 미일조약 등은 유럽 국가들이 청과 에도 막부를 ‘유럽 국제체제’의 일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후 검토하겠지만 강화도조약은 ‘문명’의 기준이 동아시아에 적용되기 직전에 체결된 조약체제로 볼 수 있다. 즉, 당시 중국·일본과 차레로 조약을 맺은 유럽 강국들은 이들과의 관계설정에서 여러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조선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점이 적용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앞장 서서 동아시아 국가와 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 내 공법체제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서구는 다른 지역과 조약체제를 통해 무역과 국제관계를 맺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이들 비서구 지역을 유럽 세계가 자동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특히 법실증주의의 중심 특징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문명국가’와 ‘비문명국가’의 구별이었다.⁰²⁶ ‘문명’이라는 척도는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1874년 파리의 국제법연구소(Paris Institute of International Law)는 이론적으로 서구와 동구(아시아도 포함)의 평등함을 선언했고, 비기독교 국가들에도 국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했다.⁰²⁷ 그러나 1885년, 같은 연구소는 “외국에 대해서 근대화된 국내법의 공정한 적용”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럽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⁰²⁸

1885년 베를린회의를 통한 아프리카사회의 분할과 식민지화는 이 ‘문명’ 개념의 공고화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그 개념을 반영하는 하나의 신흥현상이었다. ‘문명’이라는 척도로 볼 때 미흡한 지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19세기 후반 유럽 제국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²⁹ 그것은 이들 지역과 맺은 조약체제 아래서 새로운 형태의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조약체제와 유럽 국가체제의 일원이라는 척도의 분리를 의미한다. 19세기 말 국제법은 하나의 영토 내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게 된다.

특히 유럽 공법체제 아래서 비서구 지역과의 관계맺음을 법적으로 합리화한 것은 바로 1880년대 이후 본격화된 보호국화, 식민지화 등이었다.³⁰ 이는 동아시아에서 청일전쟁을 통해 주권의 배타적 지배를 보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도 공고화되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통해 이전까지 친일적 인물과의 협력을 통해 추구해온 한국 지배라는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직접적인 보호국화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국에 대한 보호국화 시도는 일본이 구체적으로 유럽 공법체제를 한반도에서 실현하고자 했다는 중요한 흐름 변화를 반영한다. 적어도 단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1880년대까지, 보호국화는 정책상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었다. 그것은 1905년 러일전쟁 직후 조선에 적용된 일본의 보호국화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마저 일본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메이지 일본은 몇 년 뒤 조선을 병합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일본이 유럽 공법체제의 일부임을 과시하는 행위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³¹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과 지배는 유럽 공법체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조약을 통한 유럽과 비유럽의 관계가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적 질서를 통해 완성된 것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물론 이 점이 일본의 한국 지배의 잔혹성을 부정하거나 보호조약과 병합조약의 법적 절차의 문제

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아래에서 강화도조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 강화도조약과 ‘국제법’

강화도조약은 대체로 한국 근대사의 시발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1860년대 유럽과 동아시아 세계의 만남을 그 전사로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1839~42년에 있었던 아편전쟁을 통해, 영국은 중국에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요했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 의미에서 중국이 중화권 외부의 국가와 맺은 번외질서라는 의미에서, 북경의 청 정부가 얼마만큼의 위기감을 가졌는지는 의문스럽다.

오히려 1860년에 있었던 제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북경이 점령당하고 청 정부의 배상금 지불에 더해 북경에 구미제국의 공사가 상주하게 되었다. 또한 영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교육 및 연구기관인 통문구완(同文館)은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1827~1926)을 통해 미국 국제법학자인 헨리 휘튼(Henry Wheaton, 1785~1848)의 국제법 저서(*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번역·소개했다.⁹³² 이 책은 1864년에 『만국공법(萬國公法)』이라는 책명으로 소개되었고 곧이어 일본에도 전래되었다. 조선에도 강화도조약 전에 이미 소개되었다.

강화도조약 전에 휘튼의 국제법 저서 한역본이 조선에 전래되었다는 것은, 강화도조약에 임했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1842~1919)가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H. Parkes)에게 말한 내용에서 드러난다. 다음의 구절은 당시 조선 정부가 강화도조약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다른 국가들이 조선에 와서 일본이 조선에 했던 것과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그들(조선 정부 협상단에 의해 충분히 예견되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과 외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의 사본과 휘튼 국제법의 북경 번역판을 소유하고 있다. 모리아마가 만난 조선의 관리들 중 한 명은 20년 동안 북경에 지속적으로 방문했고, 홍콩에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유럽과 미국의 다양한 국적자들에 대해 알고 있다(밀줄-인용 재).⁰³³

조선 정부가 강화도조약에 임해서 일본 측의 초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던 배경에는 중국이 서구 및 일본과 맺었던 조약에 대한 정보들과 더불어 휘튼의 국제법에 대한 정보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휘튼의 국제법에 대한 정보 자체가 유럽 공법체제에 기반한 지식을 무매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후 국제법을 주로 자연법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독립, 자주, 균세’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오해, 굴절, 선택’을 동반한 이해였다.⁰³⁴

강화도조약의 체제는 사실 1871년 체결된 청과 일본의 수호조규(1873년 비준)에서 나타난 ‘구체제와 신체제의 혼합’으로, 유럽적 질서와 동아시아적 질서의 이념형이 혼종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근관이 지적하듯이, 일본과 중국이 맺었던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 1871)에는 강화도조약과 매우 비슷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그것을 ‘조규체제’로 명명하든⁰³⁵ 하지 않든,⁰³⁶ 187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국제법적 질서를 나름대로 소화해서 이용한 면모를 보여준다. 청과 일본의 평등성 내지 대등성은 18개조에 달하는 청일수호조규에 골고루 반영되어 있는데, 조일수호조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전문에 들어 있는 양국 간의 “소돈우의 역유연소(素敦友誼, 歷有年所)”라는 표현은 조일수호조규, 청일수호조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동아시아 고전인 『서경(書經)』에 기원한 것이다.⁰⁸⁷ 조일수호조규 1조에 등장하는 “자주(自主)”라는 표현은 청일수호조규 3조와 1858년에 체결된 영국과 청의 조약 제3조에 등장하는 표현이다.⁰⁸⁸ 또한 양국 간 외교사신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는 1876년 조일수호조규 제2조는 청일수호조규의 제4조와 유사하고, 1876년 조규의 제3조와 1871년 조규의 제6조에서 한문과 일본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두 언어가 충돌할 시 조정할 권위 있는 언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⁰⁸⁹

조일수호조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동아시아적 질서와 유럽 공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첫째, 제1조에서 조선을 “자주지방(自主之邦)”이라고 한 것은 일본 측으로는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 정부로서는 조공 체제 내에서 내치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해 책봉체제와의 조화를 꾀한 표현이었다. 적어도 조선 협상단도 조선의 자립성과 유럽 공법체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제2조는 상주사절을 두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역시 1871년 청일수호조규 제4조의 표현과 비슷했다. “日本國政府自今十五個月後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該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라고 되어 있는 강화도조약의 원문에 대해, 조선 측은 ‘임시사절’만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장소를 서울로 한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의 일본 사신과 다르긴 하지만, 조선 측의 이해대로라면 구 통신사 제도와 연속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제4~5조는 3개 항구의 개방에 대해서, 제6조는 난파된 배의 탑승인

들의 송환 문제에 대해서, 제7조는 해안 측량권, 제8조는 개항장에서의 일본 관리 선정, 제9조는 자유무역, 제11조는 후속 무역규칙 체결, 그리고 마지막 제12조는 조약의 구속력 발생 시점과 조약문 작성의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후대에 강화도조약의 불평등성을 강조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주로 무역과 더불어 제10조의 이른바 영사재판권 관련 내용이다. 특히 이는 기본적으로 조선인 범죄지는 조선이, 일본인 범죄지는 일본 관리가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당률(唐律)에 기반한 전통적 관할권의 연속적 성격이 강했다.⁰⁴⁰

그러나 조선 정부가 최해국대우 보장을 거부한 것이나 운요호 사건에 대한 사죄 등을 거부한 것은 조선 정부 나름의 능동성을 보여준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1876년 2월 11일에 시작된 첫 번째 회의에서 조선 정부는 운요호가 국기를 올리고 접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의 사죄 요구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조선 정부의 입장을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목적이 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유럽 공법체제를 실현하고 있음을 해외에 과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⁰⁴¹ 당시 조선 대표가 이해하기로는, 전통적인 한일관계에서 대마도를 매개로 한 무역체제는 오히려 일본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었는데, 새로운 조약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본에게 경제적 관점에서 그리 중요한 조약이 아니었다.⁰⁴² 즉 조선 후기 영남권 재정은 왜관에 공여된 비중이 엄청났는데 새로운 조약체제는 장기적으로 영남권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한편 조약 체결 이후 조약 비준 형식에 대해 설왕설래한 모습은 당시 일본과 조선의 국제법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일본은 날인에 더해 천황

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조선 측 문서 작성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조약 체결이 거의 결렬 위기까지 갔다가 결국 일본 측이 양보해서 조선 국왕이 새로운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

강화도조약에 대한 조선 정부의 이해는 당시 접견대관 신헌(1811~1884)의 조약 체결 직후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저쪽 사신이 왔을 때 우리가 접견했던 것은 옛 우호를 중수하기 위한 것이요, 새로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양국의 교시(交市)도 동래부에 왜관을 설치했던 초기부터 있었던 것이며 지금 통상을 처음 허락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었으니 2개 항구를 추가하는 데 불과할 뿐이었다. (...) 하지만 이는 모두 지혜롭지 못한 자의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힘써서 선린(善隣)을 해야 할 뿐이다. 선린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를 귀하다고 여겨서 남을 천시하지 않으며 자기를 크다고 여겨서 남을 작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모두 천도(天道)의 교제(所興)이다.⁰⁴³

이는 일본의 무력으로 인해 조약 체결에 나선 조선 정부의 현실적인 입장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조선 정부가 전통적인 한일관계의 틀 안에서 강화도조약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시만이 아니라 최소한 1880년대까지도 조선 측은 강화도조약을 유럽 국제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체결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당시 조정 바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대원군의 근본적인 배외주의 혹은 배일주의와 선을 긋는 것이었다. 당시 대원군은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질서를 지키고자 했고, 일본 천황을 칭하는 것에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⁰⁴⁴ 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는 군비강화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새로운 조약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관심으로 대했다.

일본은 서계 문제와 운요호 사건의 해결을 형식적인 급선무로 내세우면서 국외에는 새로운 국제법에 따른 조선과의 관계설정이라는 초점을 강조했다. 물론 대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조선과의 관계를 메이지 신정부가 접수한다는 의의도 중요했다. 또한 일본 국내적으로는 메이지유신 이후 사족들의 불만과 신정부의 불안정한 위상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외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토 히로부미 등이 주도한 운요호 사건과 연이은 강화도조약 체결은 일본 메이지 정부에게 큰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⁰⁴⁵

그럼에도 강화도조약에 대한 구미사회의 이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영국공사에게 다음 다섯 가지 점을 강화도조약의 주요내용으로 설명했다. 공사의 수도 주차 문제, 세 개의 항구 개방, 해안선 측량, 난파된 일본인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이후 협상할 무역 문제 등이었다.⁰⁴⁶ 이 중에서도 놀랍게도 당시 유럽 공법 질서상 매우 중요한 문제인 공사의 주경 문제는 실제 조약에서는 임시체류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즉 원문은 제2조에서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에 가서 직접 예조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은 다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 조선국 정부도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해당 조선국 사신이 주재하는 기간도 역시 그때의 형편에 맞게 정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주 외교사절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전통적인 사절단의 파견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하지만 그런 점은 무시되고,

구미사회에는 강화도조약을 통해 일본이 상주사절제도를 실시한다는 식으로 소개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강화도조약이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한 것은 맞지만, 구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면서도 나름의 공법체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럽다. 적어도 강화도조약 체결 시에는 조선 측이나 일본 양쪽이 비록 동상이몽의 관점이긴 하지만 새로운 국가관계를 맺는다는 의식이 있었다. 그럼에도 강화도조약 이후인 1876년 여름에 체결된 무역 관련 조규에서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기에 후일 쌀무역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면서 조선에서 쌀부족 현상을 일으키게 되었고, 조선 정부는 1878년 이후 관세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결국 조선 정부로 하여금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고려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⁰⁴⁷ 그리고 1882년에 영국, 미국과 맺어진 조약에서 영사재판권의 수정은 조선의 국내법 수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규정되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⁰⁴⁸ 그러나 적어도 조선 측이 서서히 공법체제를 적용해 나가는 1880년대 초까지만 해도 ‘문명’이라든가 ‘민족국가’라는 유럽 공법의 기준이 한일관계에서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던 것은 확실하다.

4. 나오며

이상에서 강화도조약에 대해 한국이 이해한 국제법과 일본이 이해한 조약을 검토했다. 그런데 이 조약에 대한 당시 영국 측의 설명에서 보듯이, 한국은 이미 휘튼의 국제법 서적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측

이 일본이 제안한 조약을 수용한 것은 구래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사실 1860~70년대까지 국제법적 질서는 동아시아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을 동아시아 전통질서와 유럽 질서의 만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동아시아가 이해한 국제법적 질서와 유럽 질서, 특히 ‘주권’을 기초로 한 만남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당시 한국을 ‘문명’ 기준 이하에 위치 짓는 이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조선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지 못할 이유라는 주장은 없었다. 그러나 후대의 기준으로 보면 한국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즉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통해 마수(魔手)를 뺐었다거나, 반대로 일본의 식민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유럽 공법질서의 조선 내 이식으로서 조약을 이해하는 방식은 양쪽 모두 공히 역사적 실체와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무관세 무역과 뒤이은 중국의 관세의 일방적 적용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유럽 중심의 주권 개념이었고 조선도 후일 여기에 기초한 국제적 조약에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문명’이라는 척도로 비유럽 국가를 보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일본이 국제법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지점일 수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만들어낸 지식과 관념,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운명, 즉 보호국화와 한국병합이라는 체제의 종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강화도조약은 19세기 국제사회가 이해한 유럽과 동아시아의 만남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19세기 후반 국제법체제가 ‘문명’이나 ‘민족국가’를 기준으로 사고하기 전, 유럽과 비유럽권의 만남과 주권의 구성 문제에서 특이한 사례이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안종철

독일 튀빙겐대(University of Tuebingen) 중국-한국학과에 재직 중이고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했다. 최근의 관심 주제는 한국 법제사이다. 대표논문으로 “Who Are the First Koreans? The First Korean Nationality Law (1948) and Its Limits”, 「하와이 원주민 문제의 역사적 쟁점과 미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결분석」 등이 있다.

참고문헌

- 김민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대동문화연구』 41집, 2002.
- 김용구, 「번역의 국제정치학—마틴과 휘튼」, 『개념과 소통』 1호, 2008. 6.
- 김현철, 「개화기 서구 국제법의 수용과 근대 국제질서의 인식」, 『한국정치연구』 14집 1호, 2005.
- 김홍수, 「윤요호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한일관계사연구』 33집, 2009.
- 박배근, 「東아시아 國際法 受容期의 朝鮮의 國際法的 地位에 관한 一考」, 『서울국제법연구』 11권 1호, 2004.
- 신현 지음, 김종학 옮김,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 윤소영,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집, 2003.
- 이근관, 「朝日修好條規(1876)의 再評價—傳統的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觀點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권/1호, 2004.
- 이태진,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역사학보』 181집, 2004. 3.
-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 37.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2000.
- 하원호, 「강화도조약과 개항의 역사적 의미」, 『한일관계사연구논집 7. 일본의 한국침략과 주권침탈』, 경인문화사, 2012.
- Alexis Dudden,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iscourse and Pow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40 Harv. Int'l. L. J. 1, 1999.
- David Kennedy, "International Law and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an Illusion," 17 QLR 99, 1997~1998.
- Gerri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
- Henry Wheaton(George G. Wilson ed. and note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6(the edition of 1866).
- Jordan J. Paust, Jon M. Van Dyke, and Linda A. Malone eds., *International Law and Litigation in the U. S.*, St. Paul, MN: West, 2009.
- Marius B. Jansen ed., *The Emergence of Meiji Japa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of Press, 1995.
-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1866~1886)*, Seoul, Shinmun Dang, 1882.

- Rune Svarverud, *International Law as World Order in Late Imperial China: Translation, Reception and Discourse, 1847~1911*, Leiden: Brill, 2007.
- Shogo Suzuki,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2009.
- W. J. Mommsen and J. A. De Moor eds., *European Expansion and Law: the Encounter of European and Indigenous Law in 19th and 20th Century Africa and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 001 Jordan J. Paust, Jon M. Van Dyke, and Linda A. Malone eds., *International Law and Litigation in the U.S.*, St. Paul, MN: West, 2009, p. 2.
- 002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1876년 2월)를 통상적으로 일컫는 표현인데 같은 해 8월에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朝日修好條規附錄) 및 조선국의정제항일본인민무역규칙(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1876년 8월)을 포함하기도 한다.
- 003 최덕수, 「강화도조약과 개항」, 『한국사 37. 서세동점과 문호개방』, 국사편찬위원회, 2000.
- 004 Alexis Dudden, *Japan's Colonization of Korea: Discourse and Powe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 005 이태진, 「19세기 한국의 국제법 수용과 중국과의 전통적 관계 청산을 위한 투쟁」, 『역사학보』 181집, 2004. 3.
- 006 어떤 의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 의해서야 겨우 합의를 보게 되었고 이마저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연합(United Nations)체제나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 1949)에 의해서, 그리고 1950~60년대 제3세계 지역의 탈식민지화와 국제사회의 통합을 통해서 온전한 ‘국제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 007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Sovereignty and Colonialism in Nineteenth-Century International Law”, 40 *Harv. Int'l. L. J.* 1 1999.
- 008 특히 헤들리 볼(Hedley Bull)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학파(English School)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학파의 입장을 잇고 있는 주요 저서로 Gerri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1984를 들 수 있는데 이 책의 서문을 헤들리 볼 교수가 썼다는 점은 흥미롭다.
- 009 윤소영, 「朝日修好條規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집, 2003; 이근관, 「朝日修好條規(1876)의 再評價—傳統的 東아시아 國際秩序의 觀點으로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권/1호, 2004.
- 010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p. 2.
- 011 *Ibid.*, p. 6.
- 012 이들 학자들의 저서에 대해서는 *Ibid.*, pp. 8~10 참고.
- 013 *Ibid.*, pp. 10~11.
- 014 비스마르크는 “일단 강대국의 이해가 관련된 한, 법은 강대국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익숙하고 만약 국제법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저촉되면 군사력이 대신 사용된다”라

고 일본 사절단에게 말했다. 구메 구니다케, 『米歐回覽實記』 3卷, 岩波文庫, 1979, 329 쪽(Shogo Suzuki, *Civilization and Empire: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Routledge, 2009, p. 83에서 재인용).

- 015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pp. 11~12, 22.
- 016 Ibid., p. 12.
- 017 법실증주의와 국민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는 Ibid., pp. 13~17.
- 018 David Kennedy, "International Law and the Nineteenth Century: History of an Illusion," 17 QLR 99, 1997-1998, pp. 122~123.
- 019 Ibid., p. 123.
- 020 Henry Wheaton (George G. Wilson ed. and note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6(the edition of 1866), pp. 44-47.
- 021 David Kennedy, "International Law and the Nineteenth Century," p. 125.
- 022 Ibid., p. 128.
- 023 Gerri W. Gong,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p. 113.
- 024 Ibid., p. 109.
- 025 물론 오토만제국은 1839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족과 상속 관련법을 제외하고 유럽의 법을 받아들이는 적극성이 있었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sin Orucu, "The Impact of European Law on the Ottoman Empire," in W. J. Mommsen and J. A. De Moor eds., *European Expansion and Law: the Encounter of European and Indigenous Law in 19th and 20th Century Africa and A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pp. 44-51.
- 026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p. 22.
- 027 Eric Seizelet, "European Law and tradition in Japan," in W. J. Mommsen and J. A. De Moor eds., *European Expansion and Law*, p. 63.
- 028 Ibid., p. 66.
- 029 Anthony Anghi, "Finding the Peripheries," pp. 57~62.
- 030 Ibid., pp. 49~57.
- 031 Alexis Dudden, *Japan's Colonization of Korea*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 032 Henry Wheaton,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36. 동아시아에서 국제법, 특히 유럽 중심의 공법체제는 아편전쟁 직후인 1840년대부터 소개되었다. 특히 『해국도지(海國圖志)』, 『이언(易言)』, 『영환지략(瀛環志略)』 등의 책이 유럽의 지리와 공법체제를 일부 소개했다. Rune Svarverud, *International Law as World Order in Late Imperial China: Translation, Reception and Discourse, 1847~1911*, Leiden: Brill, 2007, pp. 71~75. 이 책들은 1860년대에 이미 조선에 수입되어 유럽의 공법질서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휘튼의 한역서인 『만국공법』에 대해서는 김효진, 『서양 헌법 이론

- 의 초기 수용』, 철학과 현실사, 1996, 490~495쪽.
- 033 Sir H. Parkes to the Earl of Derby, No. 57 Confidential(March 27, 1876), in Park Il-Keun ed., *Anglo-American Diplomatic Materials Relating to Korea (1866~1886)*, Seoul: Shinmun Dang, 1882. p. 47(이하 *Anglo-American Materials*).
- 034 김용구는 이런 번역으로는 유럽 국제정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한다. 김용구, 「번역의 국제정치학—마틴과 휘튼」, 『개념과 소통』 1호, 2008. 6. 그러나 휘튼의 저서가 기본적으로 자연법적 요소가 강했던 19세기 전반기에 출간된 것임을 고려할 때, 향후 실증법적 요소가 강해지는 국제법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 035 김민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대동문화연구』 41집, 2002.
- 036 박배근, 「동아시아 국제법 수용기의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일고」, 『서울국제법연구』 11/1, 2004, 11쪽. “이는 국제법상의 ‘조약’ 개념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약’은 국가 간의 구속력 있는 명시적 합의로서 그에 대해서는 다양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요하지 않는 일이다.”
- 037 이근관, 앞의 글, 66쪽; 강화도 조약의 원문은 『구한말조약회찬』 상, 국회도서관, 1964를 참고.
- 038 위의 글, 67쪽.
- 039 위의 글, 67쪽.
- 040 위의 글, 73쪽.
- 041 김홍수, 「윤요호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 『한일관계사연구』 33집, 2009.
- 042 신현 지음, 김종학 옮김, 『심행일기: 조선이 기록한 강화도조약』, 푸른역사, 2010, 332쪽.
- 043 위의 책, 320쪽, 333쪽.
- 044 위의 책, 376~381쪽.
- 045 김홍수, 앞의 글, 2009.
- 046 Mr. Plunkett to the Earl of Derby, No. 43(March 6, 1876); Mr. Plunkett to the Earl of Derby, No. 48(March 9, 1876), in *Anglo-American Materials*, pp. 39~40.
- 047 김경태, 「불평등조약 개정 교섭과 방곡 문제」, 『한국근대경제사연구—개항기의 미국 무역·방곡·상권 문제』, 창작과 비평사, 1994 참고.
- 048 Eric Seizelet, “European Law and tradition in Japan,” p. 64.

■ Opening Ports of Korea to East Asian Market: from the Viewpoint of Chinese Overseas

Isikawa Ryota

Joseon Korea remained the last tributary state of Qing China even after its opening treaty ports. However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was closely linked with other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hinese people in Korea of the time was a part of broadly-based migr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m in East Asia, too. They had two main characteristics: inter-ports moving on the basis of modern infrastructures in treaty ports and traditional drift of Shandong farmers to Liaodong peninsula and more northern areas which had continued from eighteenth century.

As for Chinese merchants who got engaged in Korea-China trade, their process of movement and institutions or infrastructures which they used were diversified. From their individual case studied, we can find that historical meaning of Chinese merchants in Korea cannot be understood only from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n counterparts. We have to restore their wide-ranged activities in intra-Asian market totally, and locate their activities in Korea in it.

Keywords: Chinese overseas; East Asian market; treaty port; migration; foreign pressure.

■ 19th Century “International Law” and Korean-Japanese Treaty of 1876

Jong-Chol An

Korean-Japanese Treaty, or Kanghai Treaty (1876) is a signal for the coming of modern Korean-Japanese relations. Ultimately, Chosŏn Korea was annexed by Japan in 1910 and the dynasty foiled in its own endeavors to preserve sovereignty and pursue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law.” Thus, conventional wisdom shows tendency to understand this treaty as a starting point for Japanese aggression on Korean peninsula as well as a arrival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 East Asia. It is assumed that there had been continuity of Japanese colonial scheme and the solid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n this paper, the Kanghai Treaty has more points in terms of revival of the traditional Korean-Japanese relations so that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no customs tariff, and opening ports could be understood by the traditional Korean-Japanese perspective on

the part of Chosŏ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we can evaluate the Kanghwa Treaty in the process of the international law formation, not an established or given order. This perspective seeks for shedding a new light on the Treaty, rather than denying unequal characters of the treaty and the incorporation of European international law into East Asia.

Keywords: Kanghwa Treaty; International Law; Man’guk Kongpŏp(All Nations’ Law); Tributary Relation; Natural Law; Positive Law.

■ Bernie Sanders and Jeremy Corbyn Syndromes

Kim Man Kwon

This article, from a context of globalization, explores the question of why grassroots movements enthusiastically support two radical leftist figures, Bernie San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Jeremy Corbyn in United Kingdom. To better understand these syndromes spreading throughout the transatlantic lefts, democrats, and liberals, it will try to answer these four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has economic inequality magnified throughou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since 1980s generated both political and social inequality even in advanced democracies? Second, why did middle class beneficiaries of welfare states become supporters of neo-liberalism as the ideology of promoting global economy? Third, what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grassroots support for Sanders and Corbyn from a global perspective? Finally, are these grassroots movements providing a new revolutionary vision against 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inequality embedded in the process of contemporary globalization?

Keywords: Bernie Sanders; Jeremy Corbyn; globalization; grassroots movement; inequality.

■ Is Cross-Strait Reconciliation Still Possible after the DPP Resumes Power in 2016: The Uneasy Encounter between China Dream and Taiwanese Small-But-Real-Happiness

Jinn-yuh Hsu

The expected and realized victory of the China-unfriendly DPP(Democratic Progressive